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03.10. 9.	규칙 제415호
개정	2004. 4. 6.	규칙 제426호
	2008. 6.19.	규칙 제499호
	2010. 3. 5.	규칙 제521호
	2011. 2.14.	규칙 제549호
	2011.11.15.	규칙 제573호
	2012. 1. 2.	규칙 제590호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3. 2.26.	규칙 제621호
	2015. 2. 3.	규칙 제661호
	2017. 8.31.	규정 제746호
	2018.12.17.	규정 제7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이하 “사회체육대학원”이라 한다),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이하 “교육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입학

제1절 신입학

제3조(신입생모집계획) 대학원에서는 매 학년도 입시 기본방침에 따라 신입생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지원절차)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신입생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 및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사정) ① 입학자의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은 일반전형은 성적순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취득점수 순으로 한다.

② 입학인원 내라도 입학성적이 불량하거나 또는 부적격자로서 학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대학원위원회가 판단하면 입학사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절 재입학

제6조(재입학) ① 학칙 제41조의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 전형 절차에 따라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재입학자의 학적관리) 재입학자의 학기는 퇴학 또는 제적당시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 한다.

재입학학기	정규 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1	1학기 이상	9학점 미만	6학점 미만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	6학점 이상 - 12학점 미만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 27학점 미만	12학점 이상 - 18학점 미만
4	3학기 이상	27학점 이상 - 36학점 미만	18학점 이상 - 24학점 미만
5	4학기 이상	36학점 이상 - 45학점 미만	24학점 이상
6	5학기 이상	45학점 이상 - 54학점 미만	
7, 8	6학기 이상	54학점 이상	

※ 단, 대학원 석사과정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4학기에 재입학 한다

제3절 편입학

제8조(전형방법) 편입학의 전형방법은 전적대학원의 성적, 필기시험, 구술시험, 서류심사 등으로 하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9조(편입학자의 학점 및 재학기간 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소속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한다.

② 편입할 수 있는 학기는 다음과 같으며, 편입학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

편입학 학기	편입학 자격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2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9학점 이상인 자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3	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인 자

제3장 등록

제10조(등록) 원생은 학칙 제44조에 따라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납입금(입학금, 수업료)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당해 학기 재학생이 된다. 다만, 학칙 제4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11조(등록의 구분)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정규등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은 수료 후 졸업(학위취득)까지를 말한다.
- ③ 연구등록금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연구등록 중인자의 임무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납입금) ① 매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과 그 납부 기간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원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을 면제한다.
- ③ 납입금의 납입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등록금)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박사과정 : 수업료의 10의 1 <개정 2015.2.3., 2018.12.17.>
- 2. 석사과정 : 수업료의 10의 1 <개정 2015.2.3., 2018.12.17.>
- ② 수료자 중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③ 연구등록금징수 및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연구등록생의 임무 및 자격) ① 연구등록생은 원생의 신분으로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연구등록생은 학위를 수여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 1.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 및 수강
- 2. 논문연구계획서의 발표
- 3. 논문제출
- 4. 학내시설 이용
- 5. 학생증 발급

제15조(납입금의 반환) 과오납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원생은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휴학 및 복학

제1절 휴학

제16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해외유학 또는 연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2. 군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의무복무로 인한 경우)
3. 임신·출산·육아 휴학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 휴학은 1년 이내, 육아 휴학은 3년 이내

제17조(휴학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 비치된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원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등록 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절 복학

제18조(복학시기) ① 복학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3분의1(학기개시 후 5주)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군입대 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출석일수 확보가 수업일수 3분의2이상 가능한 입증서류(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복학추천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2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19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한다. 다만, 모집단위의 통합·신설 및 폐지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할 경우에는 개정사유서, 개편 안 및 신·구문대조표를 작성하여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개편한다.

제2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과정 및 학과(전공)별로 편성한다. <개정 2015.2.3.>

제22조(교과목번호) ① 모든 교과목에는 교과목번호를 부여한다.

② 교육과정에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제2절 교육과정 이수

제23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4조(타학과 및 타전공과목의 이수) 각 대학원 내의 타 학과 및 타전공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5조(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인정)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제26조(복학생 및 재입학한 원생의 교과이수) 휴학한 원생이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수업

제1절 수업계획서

제27조(학사일정) 총장은 학년도 개시 30일 이전에 학사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강의계획)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20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시간강사 위촉)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거나 담당시수 초과 등으로 인한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강사는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제2절 강의평가

제30조(강의평가)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학기에 설강된 교과목의 담당교원(시간강사 포함)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는 교과목의 강좌별 전체 수강원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강의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수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④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여, 다음 학기 강의계획수립 및 강의 진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⑤ 시간강사의 평가결과는 시간강사를 추천한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 시간강사 추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3절 수업시간표

제31조(수업시간표 작성 및 변경) ① 총장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1주일 전까지 개설과목과 시간표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 중복, 분반 및 합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한다.

제33조(수강인원의 조정) ① 과목당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② 과목당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수강인원은 30명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 동일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기 수료한 학점이 많은 자(초과 이수학점 포함)

2. 평균평점이 우수한 자

3.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라도 개설할 수 있다. 단, 수강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절 수강신청

제34조(학점의 구분) 원생이 재학 중 수료와 학위취득 및 연구에 필요한 학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하 “수료필수학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 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선수과목 수강지정자는 당해 선수과목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대학원생은 연구법 6학점 포함, 사회체육대학원생은 전공 과목 12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14학점 및 교직교과 4학점 이상을 포함) 다만,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

나.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전공 9학점, 연구법 6학점, 모학문 및 심화전공 21학점 (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

2. 연구에 필요한 학점(이하 “연구학점”이라 한다)은 원생의 희망이나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으로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별도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한다.

3. 선수과목이수학점은 수료 필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강신청절차) 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작성된 수업시간표에 따른다.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복학자 및 기타 부득이한 자는 수업일수 3분의1 이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원 내의 소속 학과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나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수업시간을 충복하여 수강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 이수한 교과목(동일 인정과목 및 대체이수과목 포함)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36조(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강신청변경원을 수강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제1항의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합반된 경우

2. 수강신청 후 수업시간이 변경되어 다른 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된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교과목의 재수강) ① 재수강은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재수강에 따른 성적은 A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재수강에 따른 성적이 이전 성적 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5절 출석관리

제38조(출석부) ① 교과담당 교수는 원생의 출결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교과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성적을 기록하고, 그 출석부를 당해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39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수시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중간시험은 학기 중간에, 기말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여부, 실시방법 등은 교과담당교수 재량에 따른다.

제40조(평균평점) 학칙 제65조제3항의 수료에 필요한 평균평점 산출은 취득하지 못한 점수(F)를 제외하고 수료필수 학점 중 취득한 점수만으로 산출하며, 재수강과목의 경우 높은 점수를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한다. 단, 성적통지 및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평균평점의 산출은 당해학기 수강신청한 모든 수료 필수학점의 평균평점으로 한다.

제41조(학점의 표기방법) ① 수료 필수학점은 과목별로 등급, 점수, 평점으로 표기한다.

② 연구학점과 선수과목 학점은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등급은 “S”(성공)로 표기하고 점수를 기재하되 평점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성적입력) 교과담당교수는 교과목성적을 학기 종료 7일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되지 아니한 원생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43조(미완인 성적의 처리) 학칙 제65조제5항에 따라 성적조정이 미완인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I”를 부여하며 당해 학기 종료일까지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면 “F”로 처리한다.

제44조(성적 정정 금지) ① 과목담당교수가 당해학기 강의 종료 후 제출한 성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성적을 정정할 경우 과목담당교수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하여야 한다.

제45조(학점의 학적부 기재)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되 “F”로 처리된 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6조(학기인정) ① 학기의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학기의 인정은 수료 필수학점의 취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석사과정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1	9학점미만(12학점 미만)	6학점미만	1학기이상
2	9학점이상 18학점미만(12학점이상 24학점 미만)	6학점이상 12학점미만	2학기이상
3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24학점이상 36학점미만)	12학점이상 18학점미만	3학기이상
4	24학점이상(36학점이상)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4학기이상
5		24학점이상	5학기이상

※ () 안은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과정임.

나. 박사과정 <개정 2018.12.17.>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1 학기	9 학점 미만	1학기 이상
2 학기	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	2학기 이상
3 학기	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	3학기 이상
4 학기	36 학점 이상	4학기 이상

다. 석 · 박사 통합과정

인정학기	수료필수 학점취득	등록학기
1 학기	9 학점 미만	1학기 이상
2 학기	9 학점 이상 18 학점 미만	2학기 이상
3 학기	18 학점 이상 27 학점 미만	3학기 이상
4 학기	27 학점 이상 36 학점 미만	4학기 이상
5 학기	36 학점 이상 45 학점 미만	5학기 이상
6 학기	45 학점 이상 54 학점 미만	6학기 이상
7 학기	54 학점 이상 (논문지도 1차 학기)	7학기 이상
8 학기	54 학점 이상 (논문지도 2차 학기)	8학기 이상

2. 수료는 수료 필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이수함을 말한다.
 3. 수료예정은 수료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업연한 최종학기에 재학 중임을 말한다.
 4. 졸업은 학위논문을 취득하였음을 말한다.
 5. 졸업예정이란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함을 말한다.
- ② 학적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당해증명서,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논문학기와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47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수업일수 3분의2가 경과한 이후에 제16조제2호에 따라 휴학한 자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3. 시험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제8장 연구생

제49조(연구생 선발인원) 본 대학원에 연구생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0조(연구생의 과목수강) ① 연구생은 매학기당 대학원 9학점,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생 재학기간중 대학원은 18학점,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는 연구학점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제51조(연구생의 청강료) ①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청강료는 연구등록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의 학칙적용) 연구생의 임무 및 학칙의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연구생 자격부여) 연구생에게는 특수교과목 또는 과제를 수강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교과목의 수강
2. 학내시설 이용
3. 연구생증 발급
4. 과제물 연구

제5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을 적용

하되, 동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제415호, 2003. 10. 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 (학사운영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학사운영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제426호, 2004. 4.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44호, 2005. 6.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99호, 2008. 6.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21호, 2010. 3. 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34조 제1호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49호, 2011. 2.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3호, 2011. 11. 1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34조 제1호 ‘가’ 목 및 ‘나’ 목 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0호, 2012. 1.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4조 제1호 ‘가록’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96호, 2012.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1호, 2013.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1호,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46호, 2017.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7호,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중 제13조제2항 및 제46조제1호나목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